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절 회 계	제2절 회 계	
<p>〈신설〉</p>	<p>제12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p> <p>① 이 법인은 관할청의 요청에 의해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감리(監理)를 받을 수 있다.</p> <p>② 이 법인은 관할청의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받을 수 있다.</p> <p>제12조의3(예산편성의 예외)</p> <p>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p>	<p>「사립학교법」 제31조의2 개정에 따른 정관 제·개정 제정.</p> <p>「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 14조(예산편성의 예외) 적용</p>
<p>제3절 예산과 결산의 <b>보고</b> 및 공시</p> <p>제13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② &lt;생략&gt;</p> <p>〈신설〉</p>	<p>제3절 예산과 결산의 <b>편성</b> 및 <b>보고</b> 공시</p> <p>제13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이 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이 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사립학교법」 제31조 개정에 따른 정관 제·개정 제정.</p>
<p>제17조의1(임원의 선임방법)</p> <p>① 이사 정수의 4분의 3과 감사 1인은 한국 성서침례교회 전국친교회의 추천을 받고, 이사 정수의 4분의 1은 대학</p>	<p>제17조의1(임원의 선임방법)</p> <p>① 이사 정수의 4분의 3과 감사 1인은 한국 성서침례교회 전국친교회의 추천을 받고, 이사 정수의 4분의 1은 대학</p>	<p>「사립학교법」 제20조 개정에 따른 정관 제·개정</p>

현 행	개 정 안	비고
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을 받고, 감사 1인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단수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을 받고, 감사 1인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단수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정.
제18조(임원선임의 제한) ①~② <생략>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신설>	제18조(임원선임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사립학교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정관 제·개정 제정.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지난 사람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삭제>	「사립학교법」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비고
<p>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p> <p>②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style="color: red;">〈신설〉</p>	<p>②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b>출석으로 개의(開議)</b>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p>	개정에 따른 정관 제·개정 제정.
<p>제27조의1(이사회의 소집) ①~② &lt;생략&gt;</p> <p style="color: red;">〈신설〉</p>	<p>제27조의1(이사회의 소집) ①~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p>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개정에 따른 정관 제·개정 제정.
<p>제27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p> <p>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p> <p style="color: red;">〈신설〉</p>	<p>제27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p> <p>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p> <p>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회의록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p>	

현 행	개 정 안	비고
	<p>고, 그 회의록이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p>	
제77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1. 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b>기금</b>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제77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1. 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b>&lt;삭제&gt;</b>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사립대학정책과 -1485 (2022.02.15.) 의거 중복 단어 삭제.
제8장 보 칙 <b>〈신설〉</b>	<p><b>제8장 보 칙</b></p> <p><b>제82조(사학기관 행동강령)</b></p> <p>① 이 법인과 설치학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p> <p>    가.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p> <p>    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p> <p>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p> <p>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p>	사립대학정책과 -3377 (2022.04.11.) 의거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정관 제·개정 제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p>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설치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1.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p> <p>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 개정은 <b>2022년 1월 20일</b> 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개정사항) &lt;삭제&gt;</b></p>	<p><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 개정은 <b>2022년 4월 20일</b> 부터 시행한다.</p> <p><b>&lt;삭제&gt; &lt;삭제&gt;</b></p>	<p>사립대학정책과 -1485 (2022.02.15.) 의거 불필요한 조문 삭제.</p>